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나요?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

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입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0일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다.

시말서 연5회 이상 제출과 징계해고

시말서 연5회 이상 제출한 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말서를 5회 이상 제출한 사실을 통해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위험성 반성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 경위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 등 비위 정도가 무겁고 더욱이 시말서 제출명령에도 한번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회사의 징계권행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8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문제

제 소유의 토지가 하천(河川) 옆에 위치한 관계로 3년 전 태풍으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하여 상당부분이 유실되어 현재 물이 흐르는 등 현실적으로 하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청에서 위 하천에 제방을 쌓으면서 침식된 제 소유토지부분을 하천으로 편입시켰는데, 군청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요?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浦落)'이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하천에서 넘쳐 나온 물에 잠겨 그 원상복구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복구가능여부는 포락당

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1996.8.25. 95다18659,78다1296,1297). 또한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私權)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와 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12.27. 83다기561).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포락된 토지의 현재상태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원상회복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토지가 포락하여 하천구역상태로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

는지 아니면 하천법상의 하천이 되어버린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례는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은 별도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 741조, 대법원 1995.12.8. 95다39441).

문의: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갑작스런 정전은 왜 발생하나요?

첫째, 낙뢰, 폭풍우 등으로 인해 한전의 특고압 선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그 선로를 통해 공급받는 특정지역 전체가 정전이 발생하며, 이러한 정전의 경우에는 배전선로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고장 지역을 한전에서 원격으로 감지하게 되므로 개별 고객이 별도로 정전 발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전에서 고장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둘째,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입 선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해당 가정, 사무실, 공장만 정전이 발생하며 이러한 정전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정전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으로 정전이 발생한 고객이 한전에 신고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정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 내부 전기기구나 전선의 누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으로써 특히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정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 배전반의

누전차단기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누전차단기를 다시 올리면 전기는 들어갈게 됩니다.

정전 발생시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마를 일대가 함께 정전된 경우 라든가 내부 누전차단기가 떨어져 있지 않는데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 ☎12398 또는 한전 포천지점 배전운영실 ☎539-0267~8번으로 전화해서서 위치와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복구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정전복구 조치를 하게 됩니다. 내부누전이 발생하여 누전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 전기안전공사 ☎850-7000번으로 전화해서서 누전검사를 받으시고 인근의 전기공사업체에 연락하여 누전개소를 해소하는 내선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당신의 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1)

딸이 당한 그 피해를 사실로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딸의 인생에 그 피해로 인하여 갑자기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가 오히려 딸에게 자신에 대한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80% 이상이 가해자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낯선 사람

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당했으므로 그녀는 타인을 신뢰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폭력은 성(sex)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을 공격하고 지배하려는 범죄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말 또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기 마음에 대로 조종, 모욕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서

적인 모든 면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원했다."든지 "그녀도 그것을 즐겼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당시 그녀가 어디에 있었고 시간이 어느 때였고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이 그녀가 강간을 당하도록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딸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딸이 딸에게 건네는 말이나 행동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딸이 이미 지니고 있는 죄의식(자책감)을 더 깊고 크게 심어주는 것이 되므로 그녀의 고통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상담센터 성폭력 피해 부모를 위한 지침서 중에서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진단검사의학과장 민도식



나도 무릎이 아픈데 혹시 관절염 아닌가?

이제 앞으로 내가 다독거리며 살아야 할 관절염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은 개별적인 질환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아무리 같은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증상과 이에 따른 치료 방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구별하기 힘든 일관성 쌍둥이라 할 지라도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취향과

개성이 있듯이, 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라 할지라도 그 양상은 크게 다른 것이다.

둘째, 절대 조금만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 질환들은 하루아침 사이에 생기는 그런 병들이 아니기에 치료의 경과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질병을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큰 지원군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친구(관절염)가 잘못된 길에서 회복되는 방

법은 있기에 친구를 다시 적으로 몰아가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너무 일찍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한가지 약물이나 치료 방법을 적어도 4주 정도는 써보아야 하며 설사 그 방법이 효과가 없을지라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친구 사귀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친구 관리를 의사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일이 아니라, 환자 본인 또한 그 일익(一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절염 환자들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친구를 잘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통증을 덜 느끼고 더 활동적이라는 사실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으며, 의사나 환자들에게 모두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의: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50)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부채지주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시골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과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종과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 양도 분부터 부채지주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채지주 임야로 보지 않는 경우

라 함은 개인이 임야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경계가 붙어있는 시·군·구에 거주하여 재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임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혼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이상일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혼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이상일 때,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혼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이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특례조항을 두어 부채지주 임야에 대하여 종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속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분 중 5년이 경과했다라도 2009.12.31.까지 양도 시 포함)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중증소유 임야,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임업후계자, 종자·묘목 생산업자가 종자·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종과하지 않습니다. 위 열거내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세무사 박운중(031-872-6116)

GOEUN 고객이 만족할수 있는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



최두열 대표이사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7 포천한전 단가 업체

주인정신 · 성실시공 · 실력배양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고은종합전기(주)

본사: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전화: 031)542-9771~4 / Fax: 031)542-1115